

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 (제7조제1항 관련)

1.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소득재분배 급여 금액	=	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	×	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「국민연금법」 제 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	×	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시점 까지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	÷	12 (月)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	---	-----------

2.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1988년부터 1998년까지: 1천분의 2천400

나. 1999년부터 2007년까지: 1천분의 1천800

다. 2008년부터 2027년까지: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
각 호에 따른 연도별 비율

라. 2028년 이후: 1천분의 1천200

3.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
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가.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: 연금수급 전년도에의 평균소득월액. 다
만,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
권자에 대해서는 1,271,595원을 적용한다.

나.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: 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제1항제1호
에 따라 산정한 금액. 다만,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
가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,271,595원을 적용한다.

4. 제7조제2항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
른 금액을 제1호의 산식 중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「국민연금법」
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.